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82
----------	-----

제출연월일 : 2012. 2. .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2011. 12. 31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례상의 일부 감면사항이 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해당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 2011. 5. 30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만공사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와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 12. 31일 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감면조항 삭제
- 1)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2)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3) 제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4)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5)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6)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7)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8) 제1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9) 제14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나. 상위법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율 조정
- 1)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안 제2조
 - 감면기간 1년 연장 : 2012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과세특례분 감면율 상향조정(50% → 100%)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조정 : 안 제4조
 - 제①항과 제②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
(전액면제 : 7년, 50/100경감 : 3년 → 15년간 전액면제)
 - 제③항과 제④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
(50/100경감 : 7년, 30/100경감 : 3년 → 10년간 50/100경감)
 - 3)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 안 제5조
⇒ 토지 분리과세 규정 삭제
 - 4)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
⇒ 감면기간 1년 연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 다. 적용시한 연장 : 2014. 12. 31까지 연장

3. 근거법규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나.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4.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2011. 12. 26. ~ 2012. 1. 15.(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으면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

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에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 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징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8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2. 08 (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2. 13(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2. 22(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윤병진 총무국장)

- 가. 2011.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감면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 나. 2011. 5. 30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만공사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와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등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감면조항 삭제

- 1)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2)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3) 제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4)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5)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6)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7)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8) 제1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9) 제14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나. 상위법에 따라 감면기간 및 감면율 조정

- 1)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감면기간 1년 연장 : 2012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과세특례분 감면율 상향조정(50% → 100%)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조정 : 안 제4조
 - 제①항과 제②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
(전액면제 : 7년, 50/100경감 : 3년 → 15년간 전액면제)
 - 제③항과 제④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
(50/100경감 : 7년, 30/100경감 : 3년 → 10년간 50/100경감)
- 3)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 안 제5조
 - 토지 분리과세 규정 삭제

- 4)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
• 감면기간 1년 연장 :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 적용시한 연장 : 2014. 12. 31까지 연장

5. 관련법규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나.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6. 검토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부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 「지방세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조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조정,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등은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 적용 사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임

○ 결 론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조례에 규정된 일부감면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부조항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된 만큼 원안의결 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